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20호 2024. 5. 16.(목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636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하동군 조례 제2637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하동군 조례 제2638호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3
- 하동군 조례 제2639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74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35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400호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5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4
- 하동군 고시 제2024-87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55
- 하동군 고시 제2024-8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6
- 하동군 고시 제2024-90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58
- 하동군 고시 제2024-91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59
- 하동군 고시 제2024-93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60
- 하동군 고시 제2024-9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61
- 하동군 고시 제2024-95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62
- 하동군 고시 제2024-98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73
- 하동군 고시 제2024-101호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송문항)기본계획 정정 고시 . . 74
- 하동군 고시 제2024-105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77
- 하동군 고시 제2024-10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8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4-710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0
- 하동군 공고 제2024-731호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88
- 하동군 공고 제2024-734호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5
- 하동군 공고 제2024-740호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107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4-721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 110
- 하동군 공고 제2024-737호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111
- 하동군 공고 제2024-738호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 113
- 하동군 공고 제2024-748호 소하천 점·사용허가 공고 121
- 하동군 공고 제2024-756호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연장 알림 . . . 122
- 하동군 공고 제2024-757호 악양천재해복구사업 재결신청사항 공고 129
- 하동군 공고 제2024-773호 2024년 청년 나눔주택 입주자 재모집 149
- 하동군 공고 제2024-774호 2024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54
- 하동군 공고 제2024-783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158
- 하동군 공고 제2024-802호 금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공고 167
- 하동군 공고 제2024-814호 정기검사 관련우편물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169

회									
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4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36 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로 한다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동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부군수,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교통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탈퇴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제15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입장려지원
2.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3.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 4. 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교통, 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 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8조(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희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지원사업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하동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①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 전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u>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u>생활인구</u>를 말한다.</p> <p><u><신 설></u></p>	<p><u>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부개정조례안</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 ----- <u>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정책</u>----- <u>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동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u>-----.</p> <p>제2조(정의) ----- -----.</p> <p>1. “인구정책”이란 <u>저출산·고령 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말한다.</u></p> <p>2. -----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p> <p>3 ----- ----- ----- <u>사람을</u> -----.</p> <p><u>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u></p>

<신 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 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 노후·유 휴 시 설

<삭 제>

6.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
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당연직은 부군수, 지역활력추진
단장, 가족정책과장, 관광진흥과
장, 경제기 업과장, 도시과장, 건
축과장, 안전교통과장, 건강증진과
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
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
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
람

제6조(위원의 임기) -----
----- 하고-----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
- 위원-----

----- 해촉-----
--.

- 1.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6.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 4.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제9조제1항 -----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제척
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기피 -----

③ -----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回避)해야 한다.

제8조 (생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
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
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인
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생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회피--
-----.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
----- 회의-----
-----.

② -----

-----.

1 .

가. ----- 하
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 ---
연도 별 -----

나. ----- 따른 ---

2. (현행과 같음)

③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 4. (생략)
④ ~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대응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신설>

<신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① -----

----- 수당과 여비-----

----- . 이 경우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제15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입장려지원

2.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3.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4. 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교통, 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 여건개선

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2. (생 략)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제1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
군의 생활인구-----

--.

1. 2. (현행과 같음)

② -----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1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 (생 략)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 따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9조(지원사업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4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37 호

하동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명위원회업무 담당주사”를 “지명업무담당으”로 한다.

1. 지명업무 관련 부서장

제3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결정”을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제6조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u>에 따라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u>----- ----- ----- ----- -----.</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명 이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 ----- <u>10명</u> ----- ----- . <u>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u></p>
<p>② <u>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② <u>위원장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u></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u> 한다.</p>	<p>③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u>군수</u> ----- .</p>
<p>1. <u>관계 부서 국·소 관·과장</u></p> <p>2. <u>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상</u></p>	<p>1. <u>지명업무 관련 부서장</u></p> <p>2 ----- ----- ----- <u>사람</u></p>
<p>3. 그 밖에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3 ----- ----- ----- <u>사람</u></p>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하동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 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삭 제>

⑤ -----지명업무 담당으

-----.

제3조(임기) ① -----

한 차례만 연임-----.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 2. · 3. (생 략)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기능) -----
----- 심의·의결한다.

-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4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38 호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하동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기념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4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39 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5인”을 “10인”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를 “수탁 대상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 기업
4.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
5. 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제12조의 주민협의체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3조의6(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절차) ① 제3조의5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5인”을 “10인”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u>5인</u> 이상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하동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1. <u>도시재생뉴딜사업</u> 내의 공</p>	<p>제2조(정의) ----- -----.</p> <p>1 ----- ----- <u>10인</u> ----- ----- ----- ----- ----- -----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 <u>도시재생사업</u></p>

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
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
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
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
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 납부방법· 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
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
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 수탁 대상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납부방법· 시설이
용료 -----

-----.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
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
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
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1. 도시재생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5(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
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
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
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제3조의2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 기업
4.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
5. 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제12조의 주민협의체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신 설>

제3조의6(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절차) ① 제3조의5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물건의 표시
-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 4. 안전관리계획
-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12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
-- 법 제11조제1항-----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주민협의체) ① -----

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4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군수는 도시 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하동군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3.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10인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4.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5. 담장 정비 및 그린과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및 부지 등 매입비용
 9.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10.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11.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12.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3. 도시재생사업 시행 위탁 시 위탁 수수료
 1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⑤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재
 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원활
 히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
 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
 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
 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
 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
 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생 략)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
 한 특례) ①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4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규칙 제 1274 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별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증대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내용과 지원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5일까지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별지 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제2조 관련)

분야	세부 사업명 (소관부서)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지원	임 산 부 철 분 체 (건 강 증 진 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최대 6개월분) 지급														
	태아염색체검사비 (건 강 증 진 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 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 질환,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최대 60만원 이내														
	임 신 부 가 사 돌 봄 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일(분만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부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567천원 지원														
	산 후 조 리 비 (건 강 증 진 과)	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모 모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	· 산후조리원 이용시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50% 가산 지급														
	산 모 . 신 생 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 인 부 담 금 (건 강 증 진 과)	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														
	출 산 장 려 금 (지역활력추진단)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이력이 없어야 한다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달),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분할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자녀수</th> <th>지급액</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첫째아</td> <td>440만원</td> <td>신청 다음달부터 월10만원 24개월</td> </tr> <tr> <td>둘째아</td> <td>1,100만원</td> <td>신청 다음달부터 월15만원 60개월</td> </tr> <tr> <td>셋째아</td> <td>1,700만원</td> <td>신청 다음달부터 월25만원 60개월</td> </tr> <tr> <td>넷째이상</td> <td>3,000만원</td> <td>신청 다음달부터 월45만원 60개월</td> </tr> </tbody> </table>	자녀수	지급액	지원내용	첫째아	44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0만원 24개월	둘째아	1,1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5만원 60개월	셋째아	1,7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25만원 60개월	넷째이상	3,000만원
자녀수	지급액	지원내용															
첫째아	44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0만원 24개월															
둘째아	1,1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15만원 60개월															
셋째아	1,7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25만원 60개월															
넷째이상	3,000만원	신청 다음달부터 월45만원 60개월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임신·출산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쌍둥이 이상 등록 출산 축하금 (지역활력추진단)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1회에 한하여(신청월 다음달에)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다둥이 안전보험 (지역활력추진단)	가. <u>둘째아이 이상</u> 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3세이하)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u>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 아이(3세 이전)이상 자녀를 둔 사람	6세(생후 72개월)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영유아양육수당 (지역활력추진단)	가. <u>둘째아이 이상</u> 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u>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u>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u>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u>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가</u>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u>둘째아이 이상 자녀</u> 를 둔 사람	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전입 지원	전입자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한다.)	·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분야	세부 사업명 (소관부서)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입 지원	전입군인휴가비 (지역활력추진단)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 (전환 복무자 포함)	·휴가비 : 최대 30만원 (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1인 30만원
	귀농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체육과)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업 문화예술인 200만원 이내
	전입자팸투어 (관광진흥과)	전입자지원금 지원대상 중 신청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결혼식장무료대여 (관광진흥과)	전입자지원금 지원대상 중 신청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 시 대관료 전액 감액
결혼 장려	결혼장려금 (지역활력추진단)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 된 경우 (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분야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지 원 기 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주 거 지 원	신 혼 부 부 대 출 이 자 지 원 (지 역 활 력 추 진 단)	<p>가. 지원대상</p> <p>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 부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p>나. 지원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p>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3% 이내 이자(연 최대 3백만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횟수: 분기별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년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인구감소대응지원 신청서

(앞면)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 지원 <input type="checkbox"/> 결혼장려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택)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 <input type="checkbox"/> 넷째 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출산축하용품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둘째 이상)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지원	전 입 자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자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자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대여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결혼 장려 지원	성 명(남)		생년월일		전입일	
	성 명(여)		생년월일		전입일	
	혼인일자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년도)있음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 없음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혼 인 신 고 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주 현 택 황	주 택 종 류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매입		임대인 (소유자)
	전 세 보 증 금 또는 매 매 금	금	원	임차면적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 출 현 황	대 출 기 관		대 출 금 액	원
			대 출 잔 액	원
	대 출 조 건		연 대 출 이 자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 급 계 좌 (신 청 인 본인명의)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신 청 금 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4.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배우자의 부 또는 모 기준) (/)
7.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8.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류 각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 납부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9.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 증명서
10.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11.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부부 각1부.
12.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 및 동의서

1.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혼인 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		본인자필명서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주택소유여부	전세자금: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매입자금: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하동군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마련 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4.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대입) 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주택소유자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5.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하는 것에 동의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지원취소 및 환수조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td> </tr> </tbody> </table>		구분	사유
구분	사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서약·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료 지급 신청 및 청구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 관계	연락처
	주소			

임신부	성명	생년월일	출산일	서비스	이용내용
			. . .		이용기간

청구금액	금 원정 (₩) *자부담 10%						
청구내역	이용일자	이용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금액 (원)	영수방법
			기관(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0 . . .						계좌이체 / 카드결제
	20 . . .						
	20 . . .						
	20 . . .						
청구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임신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안내	○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 및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가사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사진(jpg, pdf) 각 1부 4.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영수내역서(업체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 등 증빙) 1부 5. 통장 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 및 임신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확인을 위한 진단기록, 병력, 진단서 및 소견서 내용,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p>제공하신 정보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 확인 및 ‘하동군 출산장려’ 지원정책 안내를 위해 사용됩니다.</p> <p>① 지원조건 부합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신상태, 진단서 내용 ② 접수관리 및 안내 : 전화번호</p>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문서보존기간)입니다.
<p>※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정정 및 삭제의 경우,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이용료 지급 사실의 증명을 위해 지급 이후에는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임신부 성명 : (인)
 신청인 성명 : (인)
 임신부와 관계 : (본인, 배우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배우자성명		배우자 생년월일	
연락처	본 인		
	배우자		
주소			
검사일시		분만예정일	
진료비총액			
지원신청액 (결정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 필요시) 4. 태아염색체검사결과 및 계산서·영수증 1부. 5. 의사소견서 1부. 6. 통장 사본 1부.
----------	--

위와 같이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뒷 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본인은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자 여부 등)가 하동군보건소에서 수집 · 이용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 열람 ·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을 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태아염색체검사비 지원 일부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제공)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가 검진기관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하동군보건소에서 검진기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임신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을 하기위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 열람 ·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을 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태아염색체검사비 지원 일부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하동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산후조리비 신청	[] 이 용 : 100만원 [] 미이용 : 50만원 [] 기 타 : 원	
지원대상	산모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아	성명		출산일		
	출생아	성명		출산일		
지급 받으실곳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산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						확인 (V 체크)
1.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 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및 시책지원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인의 범위 :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3.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 1부.)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 필요시) 5. 산후조리원 영수증(이용자에 한함.) 1부. 6. 통장 사본 1부.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14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훈령 제 400 호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문화체육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u>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u>이 되며 위촉 위원은 역사학·행정학·문헌정보학·기록관리학 등 관련전공자 또는 공무원 퇴직자 중 기록물평가와 관련하여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p> <p>④·⑤ (생략)</p>	<p>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u>문화체육과장, 경제기 업과장</u> ----- ----- -----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86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25.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25.
2. 점·사용의 목적 : 하동 야생차 축제 임시 가교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005 외 1필지, 96㎡
(인근 : 화개면 운수리 664)
4. 점·사용의 기간 : 2024. 4. 29. ~ 2024. 5. 29.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건설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8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26.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26.
2. 점·사용의 목적 : 도로확포장(화포마을만들기사업)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865, 56-11 / 154㎡
4. 점·사용의 기간 : 2024. 04. 26. ~ 2029. 04. 26.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도시과)

하동군 고시 제2024 - 88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9.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39-10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19-1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4.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 발생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7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39-10	2024 0429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50-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27-39	2024 0429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96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68	2024 0429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213-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626	2024 0429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341-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10	2024 0429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산16-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중터길 38-4	2024 0429	남쪽의 새터가 생기자 중터라고 부른 옛지명에서 유래	

□ 건물번호 폐지

업무구분	종전주소	효력발생일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19-1	20240429	건물번호 불필요 (민원 신청)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90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30.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30.
2. 점·사용의 목적 :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위한 인공구조물(파라솔) 임시 설치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55, 40㎡
(인근 : 화개면 운수리 664)
4. 점·사용의 기간 : 2024. 5. 10. ~ 2024. 5. 16.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농산물유통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9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30.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30.
2.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개설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2211번지 / 150㎡
4. 점·사용의 기간 : 2024. 04. 30. ~ 2029. 04. 30.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문병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9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5. 2.

하 동 군 수

- 허가연월일 : 2024. 5. 2.
- 점·사용의 목적 : 관곡 위험도로 구조재개선 사업에따른 공유수면 점용
-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972(구) / 97㎡
(인근 :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898)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27-8(구) / 138㎡
(인근 :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699-1)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3-5(구) / 10㎡
(인근 :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27-7)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3-6(구) / 70㎡
(인근 :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3-3)
- 점·사용의 기간 : 2024. 5. 2. ~ 2039. 5. 2.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건설과)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94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5. 2.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5. 2.
2. 점·사용의 목적 :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설치(수위용/조망용 각 1식)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93-1(전) / 1.59㎡
하동군 화개면 탐리 364-4(답) / 2.29㎡
4. 점·사용의 기간 : 2024. 5. 2. ~ 영구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영산강홍수통제소

하동군 고시 제2024-95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2.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10360	35-12-46.1401	127-38-35.4389	중부	290894.84	258562.49	132.203	화개면 정금리 산169-1	2024.03.29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361	35-12-44.1527	127-38-35.5366	중부	290833.61	258565.35	117.836	화개면 정금리 산184-1	2024.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362	35-12-42.5573	127-38-35.1173	중부	290784.37	258555.07	111.846	화개면 정금리 산184-1	2024.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363	35-12-40.9803	127-38-34.1969	중부	290735.62	258532.1	113.183	화개면 정금리 산184-1	2024.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364	35-01-13.4710	127-55-18.7934	중부	269747.49	284137.73	0.290	진교면 송원리 56-37	2024.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365	35-01-15.9398	127-55-16.9837	중부	269823.15	284091.15	0.402	진교면 송원리 1232	2024.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	W1036	35-01-	127-55	중부	269700.36	283989.2	0.050	진교면 송원리 1232	2024.03.29	철재	세계측

점	6	11.986 1	-12.918 0								지계
지적도근 점	W1036 7	35-00- 14.800 6	127-55- -06.030 4	중부	267936.39	283830.78	22.982	진교면 양포리 24-5	2024.04.0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6 8	35-00- 13.582 1	127-55- -05.570 2	중부	267898.73	283819.46	18.378	진교면 양포리 24-5	2024.04.0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6 9	35-00- 13.052 4	127-55- -08.084 8	중부	267882.99	283883.38	10.373	진교면 양포리 24-5	2024.04.0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0	35-05- 20.905 2	127-45- -33.276 2	중부	277247.94	269235.38	159.958	적량면 관리 산86	2024.04.0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1	35-05- 19.064 0	127-45- -33.265 3	중부	277191.2	269235.54	139.126	적량면 관리 산86	2024.04.0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2	35-05- 18.097 2	127-45- -32.261 7	중부	277161.21	269210.34	123.663	적량면 관리 산86	2024.04.0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3	34-58- 00.970 6	127-51- -38.933 3	중부	263765.25	278614.83	134.953	금남면 송문리 2-1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4	34-57- 59.577 5	127-51- -40.045 2	중부	263722.56	278643.41	134.352	금남면 송문리 2-1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5	34-57- 58.991 7	127-51- -39.050 3	중부	263704.29	278618.32	125.962	금남면 송문리 산46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6	34-57- 59.350 6	127-51- -37.454 4	중부	263715	278577.74	121.113	금남면 송문리 산44-3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7	34-57- 59.953 9	127-51- -35.775 8	중부	263733.23	278535	118.214	금남면 송문리 산44-3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8	34-57- 59.187 0	127-51- -34.346 6	중부	263709.28	278498.94	108.249	금남면 송문리 9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7 9	34-57- 58.349 5	127-51- -35.721 2	중부	263683.77	278534.04	110.473	금남면 송문리 산44-3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0	34-57- 57.371 6	127-51 -36.032 1	중부	263653.7	278542.18	107.533	금남면 송문리 산62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1	34-57- 55.806 5	127-51 -34.420 3	중부	263605.12	278501.71	106.243	금남면 송문리 산64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2	34-57- 56.199 4	127-51 -38.142 2	중부	263618.04	278596.02	121.221	금남면 송문리 산62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3	34-57- 56.256 8	127-51 -42.726 9	중부	263620.81	278712.32	143.758	금남면 송문리 산62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4	37-57- 56.559 6	127-51 -44.986 6	중부	263630.64	278769.57	150.487	금남면 송문리 산57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5	34-57- 57.856 7	127-51 -46.614 6	중부	263670.97	278810.52	157.967	금남면 송문리 산44-1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6	34-57- 48.981 4	127-51 -26.033 6	중부	263392.96	278290.74	95.960	금남면 송문리 산73-1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7	34-57- 45.938 6	127-51 -24.067 7	중부	263298.76	278241.67	96.999	금남면 송문리 산74-1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8	34-57- 43.617 3	127-51 -21.859 7	중부	263226.74	278186.27	94.038	금남면 송문리 산100-1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8 9	34-57- 41.914 5	127-51 -19.894 0	중부	263173.84	278136.85	92.727	금남면 송문리 산100-1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0	34-57- 40.296 3	127-51 -19.071 0	중부	263123.79	278116.39	91.516	금남면 송문리 산83-6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1	34-57- 39.776 6	127-51 -15.567 1	중부	263107.01	278027.63	78.113	금남면 송문리 산83-5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2	34-57- 38.776 6	127-51 -13.490 2	중부	263075.74	277975.2	73.453	금남면 송문리 산83-5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3	34-57- 36.452	127-51 -12.233	중부	263003.85	277943.93	64.441	금남면 송문리 산88-14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4	3								
지적도근 점	W1039 4	34-57- 36.047 1	127-51 -10.171 2	중부	262990.91	277891.72	57.761	금남면 송문리 산88-14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5	34-57- 36.342 4	127-51 -08.688 0	중부	262999.69	277854.01	53.312	금남면 송문리 산88-15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6	34-57- 34.296 1	127-51 -01.852 2	중부	262935.15	277681.11	34.812	금남면 송문리 309-9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7	34-57- 38.302 0	127-51 -00.854 6	중부	263058.39	277654.75	28.906	금남면 송문리 산84-12	2024.04.0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8	34-58- 36.462 9	127-50 -14.959 8	중부	264840.95	276475.34	86.707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9 9	34-58- 38.118 2	127-50 -14.822 4	중부	264891.93	276471.43	87.169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0	34-58- 38.883 8	127-50 -16.078 2	중부	264915.8	276503.09	85.119	금남면 대송리 837-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1	34-58- 39.061 5	127-50 -18.818 9	중부	264921.85	276572.56	81.018	금남면 대송리 837-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2	34-58- 39.492 7	127-50 -19.913 2	중부	264935.37	276600.21	75.825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3	34-58- 39.669 8	127-50 -17.358 6	중부	264940.29	276535.36	77.967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4	34-58- 39.989 9	127-50 -15.844 4	중부	264949.83	276496.87	78.428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5	34-58- 40.578 0	127-50 -14.395 1	중부	264967.65	276459.95	74.569	금남면 진정리 산20-7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6	34-58- 39.566 0	127-50 -13.841 8	중부	264936.34	276446.18	78.219	금남면 진정리 산20-7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7	34-58- 38.177 5	127-50 -13.756 7	중부	264893.53	276444.38	82.089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8	34-58- 37.474 5	127-50 -17.582 3	중부	264872.68	276541.6	88.477	금남면 대송리 837-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0 9	34-58- 38.848 7	127-50 -20.986 5	중부	264915.76	276627.6	75.317	금남면 대송리 806-3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0	34-58- 37.611 9	127-50 -20.504 1	중부	264877.54	276615.68	69.706	금남면 대송리 837-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1	34-58- 35.577 0	127-50 -19.763 7	중부	264814.67	276597.43	68.075	금남면 대송리 837-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2	34-58- 34.027 5	127-50 -17.750 9	중부	264766.49	276546.77	70.514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3	34-58- 34.273 8	127-50 -16.062 3	중부	264773.72	276503.87	70.465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4	34-58- 32.760 0	127-50 -18.826 8	중부	264727.66	276574.39	66.283	금남면 진정리 20-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5	34-58- 33.869 9	127-50 -19.670 6	중부	264762.04	276595.51	67.634	금남면 대송리 837-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6	34-58- 38.926 0	127-50 -22.478 7	중부	264918.46	276665.43	75.217	금남면 대송리 807-3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7	34-58- 39.274 6	127-50 -24.150 9	중부	264929.56	276707.75	70.282	금남면 대송리 807-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8	35-06- 42.346 3	127-42 -02.296 4	중부	279718.66	263873.4	32.517	하동읍 홍룡리 산168-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1 9	35-06- 41.902 6	127-42 -04.070 4	중부	279705.31	263918.43	34.380	하동읍 홍룡리 산168-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W1042	35-06-	127-42	중부	279680.74	263966.12	36.505	하동읍 홍룡리 1274-5	2024.04.04	철재	세계측

점	0	41.094 7	-05.946 9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1	35-12- 10.816 8	127-38 -11.808 6	중부	289802.38	257971.79	101.253	화개면 탑리 253-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2	35-12- 11.343 3	127-38 -14.035 1	중부	289818.96	258028.01	108.137	화개면 탑리 253-1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3	35-12- 11.141 4	127-38 -16.513 4	중부	289813.15	258090.74	117.387	화개면 탑리 284-3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4	35-12- 11.256 5	127-38 -19.684 6	중부	289817.21	258170.93	129.207	화개면 탑리 284-3	2024.04.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5	35-02- 14.546 5	127-54 -10.795 2	중부	271613.98	282396.77	7.937	진교면 진교리 516	2024.04.0 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6	35-06- 36.296 3	127-48 -10.982 6	중부	279602.69	273211.54	146.741	횡천면 횡천리 산65	2024.04.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7	35-06- 37.664 5	127-48 -12.385 8	중부	279645.14	273246.73	133.260	횡천면 횡천리 산65	2024.04.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8	35-12- 02.762 9	127-38 -10.569 4	중부	289553.97	257942.03	86.281	화개면 탑리 산34-1	2024.04.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2 9	35-09- 47.939 4	127-53 -53.095 6	중부	285582.88	281822.18	92.019	옥중면 대곡리 760-1	2024.04.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0	35-09- 46.388 1	127-53 -53.556 2	중부	285535.18	281834.27	96.983	옥중면 대곡리 1072	2024.04.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1	35-09- 45.449 5	127-53 -52.781 0	중부	285506.07	281814.91	100.583	옥중면 대곡리 758-2	2024.04.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2	35-01- 10.350 1	127-52 -26.106 3	중부	269611.94	279760.51	116.925	진교면 안심리 산44-1	2024.04.0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3	35-01- 11.808 0	127-52 -26.976 4	중부	269657.06	279782.17	106.676	진교면 안심리 산44-1	2024.04.0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4	35-01- 16.679 8	127-52 -25.748 4	중부	269806.93	279749.73	90.918	진교면 안심리 275-1	2024.04.0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5	35-01- 51.963 6	127-48 -24.556 3	중부	270842.83	273626.19	83.622	고전면 성천리 산139-5	2024.04.0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6	35-01- 54.223 7	127-48 -29.468 8	중부	270913.49	273750.15	71.981	고전면 성천리 산137-2	2024.04.0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7	35-01- 55.310 9	127-48 -32.998 6	중부	270947.72	273839.36	68.800	고전면 성천리 산133-2	2024.04.0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8	35-03- 14.056 4	127-55 -03.100 1	중부	273460.07	283705.7	32.424	진교면 고이리 산60-1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3 9	35-03- 13.759 1	127-55 -01.940 8	중부	273450.64	283676.4	30.754	진교면 고이리 산60-3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0	35-03- 14.125 8	127-55 -05.137 2	중부	273462.69	283757.3	36.123	진교면 고이리 산60-1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1	35-08- 39.840 2	127-45 -20.622 0	중부	283376.36	268868.32	280.705	적량면 서리 1793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2	35-08- 38.072 8	127-45 -20.791 1	중부	283321.92	268873.01	272.033	적량면 서리 697-2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3	35-08- 36.038 5	127-45 -22.522 2	중부	283259.56	268917.31	263.391	적량면 서리 1795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4	35-07- 12.440 7	127-45 -49.267 8	중부	280688.37	269614.12	98.415	적량면 서리 1203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5	35-07- 11.358 6	127-45 -51.070 3	중부	280655.38	269660.02	96.065	적량면 서리 447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6	35-07- 10.614 6	127-45 -53.858 2	중부	280632.99	269730.79	93.921	적량면 서리 1253	2024.04.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W1044	35-04-	127-46	중부	275641.18	270247.72	37.916	적량면 동산리 1804-1	2024.04.1	철재	세계측

점	7	28.519 4	-12.748 0						2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8	35-12- 46.858 9	127-49 -57.004 5	중부	291045.01	275800.94	209.611	옥중면 위태리 산33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4 9	35-12- 47.682 8	127-49 -58.991 1	중부	291070.82	275850.97	209.689	옥중면 위태리 489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0	35-12- 48.946 8	127-50 -00.639 8	중부	291110.12	275892.35	213.578	옥중면 위태리 1730-70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1	35-01- 24.930 4	127-48 -55.846 6	중부	270016.17	274426.17	33.953	고전면 범아리 1087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2	35-01- 23.389 6	127-48 -54.821 4	중부	269968.47	274400.57	46.485	고전면 범아리 583-3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3	35-01- 22.724 4	127-48 -57.469 2	중부	269948.52	274467.86	36.103	고전면 범아리 산128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4	35-01- 19.813 2	127-48 -57.091 7	중부	269858.72	274459.03	33.931	고전면 범아리 633-1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5	35-01- 18.400 2	127-48 -55.783 7	중부	269814.91	274426.22	42.185	고전면 범아리 607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6	35-01- 16.054 4	127-48 -56.368 7	중부	269742.74	274441.65	52.414	고전면 범아리 638-2	2024.04.1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7	35-14- 12.718 9	127-38 -28.228 6	중부	293561.9	258362.9	99.936	화개면 용강리 1325	2024.04.1 6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8	34-58- 47.330 3	127-50 -55.736 0	중부	265184.59	277506.82	167.698	금남면 대송리 산37-1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5 9	34-58- 46.766 2	127-50 -56.810 9	중부	265167.43	277534.24	169.774	금남면 대송리 산37-1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0	34-58- 46.111	127-50 -58.170	중부	265147.55	277568.88	172.242	금남면 대송리 산37-3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1	6 35-01- 43.084 0	1 127-53 -30.553 5	중부	270635.19	281385.41	14.569	진교면 백련리 769-1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2	35-01- 41.655 9	127-53 -27.970 1	중부	270590.59	281320.32	16.242	진교면 백련리 16-12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3	35-01- 40.735 8	127-53 -24.619 4	중부	270561.48	281235.63	18.774	진교면 백련리 31-2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4	35-06- 15.278 7	127-50 -15.557 5	중부	278980.94	276371.80	225.840	양보면 우복리 산315-2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5	35-06- 10.041 3	127-50 -13.946 8	중부	278819.19	276332.37	220.527	양보면 우복리 산310-1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6	35-06- 07.458 0	127-50 -15.312 9	중부	278739.86	276367.64	218.006	양보면 우복리 산331-3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7	34-59- 20.856 1	127-50 -15.542 7	중부	266209.18	276478.66	82.363	금남면 덕천리 1197-5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8	34-59- 20.302 5	127-50 -11.746 4	중부	266191.31	276382.52	71.749	금남면 덕천리 1106-4	2024.04.1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6 9	35-13- 55.133 1	127-38 -34.874 5	중부	293021.02	258534.45	88.580	화개면 용강리 405-2	2024.04.1 8	맨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0	35-13- 47.894 0	127-38 -31.246 4	중부	292797.32	258444.15	83.184	화개면 용강리 414-5	2024.04.1 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1	35-08- 25.352 0	127-52 -12.920 2	중부	283015.10	279309.17	129.412	북천면 화정리 1564	2024.04.1 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2	35-10- 27.709 2	127-53 -52.840 8	중부	286808.48	281804.67	77.008	옥중면 법대리 523-2	2024.04.1 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3	35-10- 24.063 7	127-53 -50.899 4	중부	286695.69	281756.55	75.415	옥중면 법대리 603	2024.04.1 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4	35-10- 21.398 6	127-53 -47.555 3	중부	286612.79	281672.67	76.742	옥중면 법대리 603	2024.04.1 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5	35-09- 05.309 5	127-42 -50.764 0	중부	284133.27	265069.2	55.798	악양면 신대리 811	2024.04.2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6	35-09- 03.314 7	127-42 -50.197 5	중부	284071.69	265055.3	55.516	악양면 신대리 355-1	2024.04.2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7	35-09- 02.214 0	127-42 -50.832 0	중부	284037.88	265071.6	54.026	악양면 신대리 814	2024.04.2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8	35-16- 27.191 8	127-36 -36.246 8	중부	297688.34	255505.96	377.328	화개면 범왕리 1642-1	2024.04.2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7 9	35-16- 27.072 3	127-36 -37.916 6	중부	297684.92	255548.18	379.505	화개면 범왕리 1976	2024.04.2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0	35-16- 27.184 8	127-36 -39.063 0	중부	297688.57	255577.14	380.221	화개면 범왕리 1976	2024.04.24	맨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1	35-16- 25.125 9	127-36 -40.667 1	중부	297625.37	255618.07	363.995	화개면 범왕리 1977	2024.04.2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2	35-16- 27.683 8	127-36 -43.799 4	중부	297704.68	255696.75	369.929	화개면 범왕리 1564-2	2024.04.2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3	35-08- 36.341 4	127-52 -39.810 0	중부	283359.76	279986.91	141.927	북천면 화정리 194	2024.04.2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4	35-08- 35.445 8	127-52 -37.911 5	중부	283331.73	279939.09	138.155	북천면 화정리 197-2	2024.04.2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5	35-08- 36.032 8	127-52 -35.921 6	중부	283349.38	279888.56	139.327	북천면 화정리 207	2024.04.2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6	35-07- 49.748 3	127-53 -26.114 9	중부	281934.23	281171.94	153.926	북천면 옥정리 산21	2024.04.2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W1048	35-07-	127-53	중부	281910.04	281175.54	148.508	북천면 옥정리 795-1	2024.04.25	철재	세계측

점	7	48.962 6	-26.248 3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8	35-07- 47.383 2	127-53 -25.281 7	중부	281861.15	281151.5	141.351	북천면 옥정리 792-1	2024.04.2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8 9	34-57- 09.126 0	127-51 -33.017 4	중부	262166.22	278478.48	50.810	금남면 송문리 산117-5	2024.04.3 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0	34-57- 07.534 9	127-51 -34.561 0	중부	262117.52	278518.06	39.051	금남면 송문리 산117-8	2024.04.3 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1	34-57- 06.046 2	127-51 -32.707 4	중부	262071.24	278471.43	28.467	금남면 송문리 776	2024.04.3 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2	35-01- 46.919 8	127-55 -09.325 9	중부	270776.12	283888.21	51.931	진교면 송원리 80	2024.04.3 0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3	35-01- 45.823 0	127-55 -10.455 9	중부	270742.58	283917.17	49.176	진교면 송원리 80	2024.04.3 0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4	35-01- 44.946 4	127-55 -10.606 2	중부	270715.60	283921.30	42.188	진교면 송원리 산12	2024.04.3 0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5	35-01- 24.245 9	127-52 -54.957 5	중부	270046.60	280488.18	40.952	진교면 안심리 161-11	2024.04.3 0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6	35-01- 26.379 1	127-52 -54.221 4	중부	270112.19	280468.94	36.967	진교면 백련리 261-1	2024.04.3 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7	35-01- 28.306 5	127-52 -54.957 6	중부	270171.75	280487.08	36.694	진교면 백련리 256-8	2024.04.3 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8	34-58- 43.764 4	127-54 -20.058 2	중부	265120.18	282690.47	27.379	금남면 중평리 산44	2024.04.3 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49 9	34-58- 43.160 7	127-54 -18.893 9	중부	265101.31	282661.10	23.058	금남면 중평리 294-4	2024.04.3 0	철재	세계측 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98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5. 8.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5. 8.
2. 점·사용의 목적 : 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방 정비사업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317-1 외 16필지, 718㎡
4. 점·사용의 기간 : 2024. 5. 8. ~ 2029. 5. 8.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안전교통과)

하동군 고시 제2024-101호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송문항) 기본계획 정정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송문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9.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송문항)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개선
- 어업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어업환경개선
- 인접한 노량항 및 노량대교와 연계한 체류형 어촌관광 거점화 구축

3. 사업비 소요액 : 5,508.0백만원(국비 3,855.6, 도비 495.7, 군비 1,156.7백만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송문항 선착장 정비 및 준설, 부잔교 설치, 어구보관창고 조성
- 특화사업 : 천석꾼의 보물어장 조성, 해상 글램핑장 조성, 송문해안로 안전 편의시설 정비, 송문항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견기좋은 갯벌따라길 조성
- S/W사업 : 교육, 홍보, 컨설팅 등

나. 사업의 구역 :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송문항 일원

다. 기본계획 세부내역 : 붙임조서 참조

5. 사업예정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낙후된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송문항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차별성 부여

7.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토지면적(m ²)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1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4	잡종지	1,160	1,160	군유지	어구보관창고 조성
									천석꾼의 보물어장 조성
2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2	잡종지	462	462	군유지	송문해안로 안전 편의시설 정비
3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13	도로	3,140	3,140	국유지	송문항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4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5	도로	1,689	1,689	시·도유지	
5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74-2	도로	304	304	국유지	
6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75-3	도로	139	139	국유지	
7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02-2	도로	271	271	국유지	

※편입면적 : 실시설계 이후 확정

9. 기 타

- 기본계획서는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기본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본계획		
		사업량	사업비	위 치
합 계			5508.0 <179.0>	-
공통사업	◦송문항 선착장 정비	435㎡	218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25-2 일원
	◦준설	8,400㎡	672	890
	◦부잔교 설치	1,011㎡	1799.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25-2 일원
	◦어구보관창고 조성	99㎡	158.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4 일원
	소 계			2847.0
특화사업	◦천석꾼의 보물어장 조성	97.9㎡	197.0 <49.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4 일원
	◦해상 글램핑장 조성	2개소	520.0 <130.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25-2 일원
	◦송문해안로 안전 편의시설 정비	462㎡	193.2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2 일원
	◦송문항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552㎡	85.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13외 4필지 일원
	◦걸기 좋은 갯벌따라길 조성	296㎡	104.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2 일원
	소 계			1099.2 <179.0>
역량강화	◦교육	1식	173.0	-
	◦컨설팅	1식	54.0	-
	◦컨설팅	1식	43.0	-
	소 계			270.0
기타부대비	◦기본계획수립비	1식	205.0	-
	◦세부설계비	1식	499.0	-
	◦공사감리비	1식	278.0	-
	◦사업관리비	1식	56.0	-
	◦사무장 채용	36개월	72.0	-
	◦기타부대경비	1식	181.8	-
	소 계			1291.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1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5. 11.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5. 11.
2. 점·사용의 목적 : 주택신설에 따른 우수관로 설치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223 / 5㎡
(인근 : 하동읍 목도리 94-10)
4. 점·사용의 기간 : 2024. 05. 11. ~ 2029. 05. 11.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강대화

하동군 고시 제2024 - 10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3.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9의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5.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9	20240513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70-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경서대로 624-16	20240513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427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경서대로 1753.	20240513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82-3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86-12	20240513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83-5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85-9	20240513	밝고 신선한 곳이란 뜻의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569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중촌길 42-12	20240513	마을명 부여	

하동군 공고 제2024-710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제안 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 및 군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의 2)
 - 나.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의 2)
 - 다.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055-880-2584, FAX 055-880-2569, e-mail mss288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 1】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 3.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제목 “(편의용품의 지원)”을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편의위생용품”을 “편의위생용품, 청소비, 시설 개·보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관

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u> <u>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u> <u>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u>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

----- 편의위생용품,
청소비, 시설 개·보수 ----.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4-731호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매매혼 조장과 이주여성을 한국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이자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정책이라는 여론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또한 국제결혼 수요자가 적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축산과, 전화 880-7182, FAX 880-2419, e-mail:jjss645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 및 현행조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2024-731호

하동군 농촌총각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농촌총각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현행 조례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생활을 돕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하동군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9.8.30., 개정 2023.9.20.>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농촌총각국제결혼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촌총각국제결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농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1.1.7., 개정 2014.9.2., 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농업인단체장, 여성단체장, 언론인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이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혁신담당이 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1.1.7., 개정 2014.9.2., 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12.30.>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제6조(기능) 심의회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량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9.12.3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12.30.>

제8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3.4.10.>

제9조(지원대상) 군 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심의회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지원기준) 군수는 국제결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제11조(지원시기)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한다.

제12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 2호서식)를 거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하동군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총각에 해당하는지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서의 하자가 없는 자를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3.4.10.>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사업시행 후 국제결혼을 지원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조치) 단 2006년도는 사업시행 원년도로서 예외적 조치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 이전에 국제결혼이 성사된 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로서의 하자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 이유 :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층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의 근거 및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취업 알선 지원
3. 주요 내용
 - 가. 조례명 개정
 - 나. 청년외 취약계층, 중장년 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다.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9호)
 - 라.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안 10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기업과 전화 055-880-2192, FAX 055-880-2199, birani@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호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하동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중장년”이란 「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장년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알선·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일자리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장 행정·재정 지원 등

제10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 (기념품 제작 등)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2조(검사·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 등을 선정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지역활력추진단장, 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 의원
2. 기업대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여성정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창출담당이 된다.

제2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1.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를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4-740호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경감 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6조)
 - 라. 사업신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 마. 사업완료보고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11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축산과, 전화 055-880-2412, FAX 055-880-2419, e-mail lovestory@korea.kr)에 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하동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4. “조리원”이란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하동군 마을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중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기간) 마을공동급식은 재배 품목, 운영 실정 등 마을 여건에 따라연내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중 운영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급식시행 계획
4.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지원심의)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 규모 등은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완료 후 30일 이내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사진,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가 제9조의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 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가 격 기 준 일 : 2024. 01. 01
- 2. 결 정 · 공 시 일 : 2024. 04. 30
- 3. 결 정 · 공 시 필 지 수 : 285,053필지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하동읍	23,925필	고전면	20,996필	양보면	19,509필
화개면	23,844필	금남면	25,085필	북천면	16,441필
악양면	29,882필	금성면	14,217필	청암면	16,387필
적량면	19,993필	진교면	25,421필	옥종면	32,321필
횡천면	17,032필				

- 4. 결 정 · 공 시 내 용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4. 04. 30 ~ 05. 29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부서(055-880-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년 4 월 30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 2024-737호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나. 명 칭 :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악양면 미점 ~ 신성리 일원
나. 면 적 : 362,633㎡
다. 규 모 : 제방보강(우안) L=2.226km, 축제 및 보축(좌안) L=2.259km,
부대공 1식 등

4.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4. 04. 30. ~ 2024. 05. 15.(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담당(055-880-2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토지 조서(별첨) 1부. 끝.

하동군 공고 제 2024-738호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 나. 명 칭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화심리 지내
- 나. 면 적 : 372,068㎡
- 다. 규 모
 - 호안 : 식생블럭 설치 L=196m-전석쌓기 L=221.5m
 - 고지배수로 1식, 게이트 펌프 1식, 부대공 1식 등

4.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4. 04. 30. ~ 2024. 05. 15.(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055-880-2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별첨). 1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유지)

(사 유 지)

순번	시,군	읍,면,구	동,리	분필전지번	분필후지번	지목	전체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72-3	분필예정	도로	135	75	장*선	하동군 읍내동				
2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8-1	분필예정	임야	1,686	24	순흥안씨** 공파 광양**중중	전남 광양군 다압면 도사리				중대안종
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7	736-10	답	2,075	807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7	736-11	답	2,075	673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60-1	760-5	답	1,871	572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5-1		답	393	393	하동군					
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6-1	산56-5	임야	4,132	43	김*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6-1	산56-6	임야	4,132	1	김*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9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6-3	산56-7	도로	295	92	김*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2		창고용지	549	549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진주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1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5		구거	327	327	경상남도					
12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3		구거	512	512	하동군					
1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7	757-7	잡종지	11,363	606	경상남도					
1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7	757-8	잡종지	11,363	214	경상남도					
1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2	752-1	답	1,256	172	장*엽(1/2)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하동농업협동조합 (주)경남은행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1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2	752-1	답	1,256	172	황*성(1/2)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하동농업협동조합 (주)경남은행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1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1-3		답	929	929	하동군					

1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1		잡종지	998	998	남*철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악양농업협동조합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88	근저당권, 지 상권
19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7-1	분필 예정	임야	542	41	하*동*개*조 합	하동읍 읍내동			
2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1-1		답	13	13	윤*선(亡)	하동읍 읍내동			
2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11		전	69	69	하동군				
22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4-2		답	83	83	조*동(亡)	하동읍 읍내동			
23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1		제방	145	145	김*윤	하동읍 두곡리			
24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2	1-4	답	311	118	김*윤	하동읍 두곡리			
25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3		구거	595	595	김*윤	하동읍 두곡리			
26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59-1	59-10	답	1,955	189	이*례	하동군 하동읍 중앙4길			
2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4-3	204-4	제방	460	363	조*동(亡)	하동읍 읍내동			
28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3-2	203-4	전	383	243	하동군				
29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2-4	202-4	제방	194	84	하동군				
30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2-1 4	202-14	제방	297	195	하동군				
3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3-4		하천	537	537	김*인(亡)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2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3-2		하천	1,093	1093	김*인(亡)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8	738-9	과수원	960	91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6- 4	산56-8	도로	36	4	김*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			
3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8-7	738-10	대	320	12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3-3		답	78	78	신*순	하동읍 마방길			
3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3	733-4	창고용 지	3,829	72	여*옥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금남농업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근저당권, 지 상권
3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3	733-5	창고용 지	3,829		여*옥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금남농업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근저당권, 지 상권

								6						
39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3	733-6	창고용지	3,829	58	여*옥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금남농업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91(고남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33-1	833-5	답	4,465	114	신*순	하동읍 마방길				
4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33-4		창고용지	57	57	여*옥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금남농업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91(고남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2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2	732-2	답	3,331	1113	하동군					
4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0	750-3	잡종지	1,000	26	장*엽(1/2)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하동농업협동조합 (㈜경남은행)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4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0	750-3	잡종지	1,000	26	황*성(1/2)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하동농업협동조합 (㈜경남은행)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4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0-1	750-4	답	1,033	46	장*엽(1/2)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하동농업협동조합 (㈜경남은행)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4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0-1	750-4	답	1,033	46	황*성(1/2)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하동농업협동조합 (㈜경남은행)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4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5-3	755-7	답	1,372	52	신*우					
4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6	756	답	397	397	최*인					
계							78,593	12,532						

지 장 물 조 서

사업명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일련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하동읍 두곡리	733-3	소나무	묘목	1	주	신*순	하동읍 마방길	
2	"	"	감나무	묘목	3	주	신*순	하동읍 마방길	
3	하동읍 두곡리	833-5	감나무	R20	8	주	신*순	하동읍 마방길	
4	"	"	비파나무	R20	1	주	신*순	하동읍 마방길	
5	하동읍 두곡리	833-5	영산홍	W0.5~1	2	주	신*순	하동읍 마방길	
6	"	"	영산홍	W2	1	주	신*순	하동읍 마방길	
7	"	"	남천	H1.5	1	주	신*순	하동읍 마방길	
8	하동읍 두곡리	732-2	창고	컨테이너 3*6	1	식	여*욱	하동읍 화심길	
9	하동읍 두곡리	732-2 733-4 733-5 733-6 833-4	바닥	아스콘포장 측구수로관및 스틸그레이딩 포함	275	m ²	여*욱	하동읍 화심길	
10	하동읍 두곡리	738-9 738-10 1631-3	음나무	R15	3	주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1	"	"	자두나무	R12	1	주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2	"	"	감나무	R10~12	11	주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3	"	"	사과나무	R15~20	4	주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4	"	"	사과나무	R8	2	주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5	"	"	대추나무	R12	1	주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6	"	"	매실나무	R5	1	주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7	"	"	사철울타리	L:15 H:1.5	1	식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8	"	"	간판 (하동병원 장례식장)	철제 (기초포함) 0.8*3	1	식	박*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9	하동읍 두곡리	736-2	창고 (2층)	철근콘크리트 조 슬라브지붕 19.5*10	195	m ²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0	"	736-2	주차장 (1층)	철근콘크리트 조 (피로티) 슬라브지붕 19.5*10	195	m ²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1	"	736-2	창고 (1층)	철근콘크리트 조 슬라브지붕 19.5*(3+7.6)/2	103.35	m ²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2	"	736-2	출입문	철제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3	"	736-2	계단	콘크리트 0.8*7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4	"	736-2	바닥	콘크리트 5*20	100	m ²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5	"	736-2	이동식화장 실	FRP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6	"	736-2	물탱크	5톤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7	"	736-2	물품이설비	CCTV 및 창고 내외부 건자재 등 동산류일체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8	"	736-2	음나무	R20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9	하동읍 두곡리	736-5	대추나무	R30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0	"	736-5	음나무	R15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1	"	736-5	매실나무	R12	3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2	하동읍 두곡리	736-10	암반관정	6인치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3	"	736-10	지표수관정	소형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4	"	736-10	농업용전기	-	1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5	하동읍	736-11	창고	철골/강판	64	m ²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두곡리			8*8				
36	하동읍 두곡리	736-10 736-11 760-5	감나무	R25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7	"	736-10 736-11 760-5	감나무	R20	3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8	"	736-10 736-11 760-5	감나무	R15	5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39	"	736-10 736-11 760-5	자두나무	R30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0	"	736-10 736-11 760-5	배나무	R15	2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1	"	736-10 736-11 760-5	배나무	R10	4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2	"	736-10 736-11 760-5	돌배나무	R20	2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3	"	736-10 736-11 760-5	음나무	R12	2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4	"	736-10 736-11 760-5	가죽나무	R20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5	"	736-10 736-11 760-5	가죽나무	R8	2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6	"	736-10 736-11 760-5	앵두나무	R20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7	"	736-10 736-11 760-5	매실나무	R25	2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8	"	736-10 736-11 760-5	매실나무	R20	1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49	"	736-10 736-11 760-5	매실나무	R15	2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50	"	736-10 736-11 760-5	배나무 (점적시설, Y자형철지 주 포함)	R20	27	주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51	"	736-10 736-11 760-5	냉해방지기 (설비포함)	철제H6	2	식	하*철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52	하동읍 두곡리	751	사무실	철골/스라브 21*9.5	199.5	m ²	남*철	하동읍 시장1길
53	"	751	화장실	철골/스라브 1.2*4	4.8	m ²	남*철	하동읍 시장1길
54	"	751	보일러실	판넬/판넬 1.5*1.2	1	식	남*철	하동읍 시장1길
55	"	751	계단	철제 1.2*5	1	식	남*철	하동읍 시장1길
56	"	751	바닥	콘크리트	810	m ²	남*철	하동읍 시장1길
57	"	751	상수도		1	식	남*철	하동읍 시장1길
58	"	751	수도시설	수도관PE 50mm (80M)	1	식	남*철	하동읍 시장1길
59	"	751	난간대	철제 H1	70	M	남*철	하동읍 시장1길
60	"	751	사철나무	20년생	2	주	남*철	하동읍 시장1길
61	하동읍 두곡리	751	공장	철골/판넬 5*16.7*7.7* 5	122	m ²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2	"	751	바닥	콘크리트 위에폭시	122	m ²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3	"	751	가추	철골/판넬 1*10	10	m ²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4	"	751	간판 (유진카정비)	0.9*8	1	식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5	"	751	기계실	철골/판넬 2*3	6	m ²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6	"	751	서터문	철제 4*4.5	1	식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7	"	751	조명	부착형	7	개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8	"	751	폐유탱크	FRP	1	식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69	"	751	영업보상	유진카정비	1	식	이*철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70	하동읍 두곡리	751	영업보상	하동고속화물	1	식	김*수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71	"	751	가추	철골/강판 3*11	33	m ²	김*수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72	"	751	물품이전비 등	동진개발장비	1	식	공*환	하동읍 중서1길10 중동빌라	
73	"	751	영업보상	유진ENC	1	식	이*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74	"	751	간판 (유진ENC)	0.9*8	1	식	이*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75	하동읍 두곡리	750-3 751	사무실	경량철골/판 넬 11.4*5	57	m ²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6	"	750-3 751	영업보상	현대종합정비 검사소	1	식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7	"	750-3 751	샤워실 및 휴게실	경량철골/판 넬 6*3.3 (보수비포함)	19.8	m ²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8	"	750-3 751	관정	D:150mm 장옥포함	1	식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편입여 부인요 함
79	"	750-3 751	수도계량기	이설	1	식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0	"	750-3 752	감나무	R20	1	주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1	"	750-3 753	편백나무	R40	1	주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2	하동읍 화심리	1693-3	간판#1 (현대종합정 비검사소)	철제(양면) H7 6*0.8	1	식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3	"	1693-3	간판#2 (현대종합정 비검사소)	철제(양면) H2,1.5*4	1	식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4	"	1693-3	간판#3 (현대종합자 동차정비검 사소)	철제 H2,1.5*2	1	식	장*엽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5	하동읍 두곡리	755-7 756	감나무	R15	2	주	미상		
86	"	755-7 756	매실나무	R15	10	주	미상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4-748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하 동 군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대표자 (성명)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주소	하동군 경서대로 83
소하천명		고동골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93-3(구) (인근 : 하동읍 화심리 2-11)		
	면적	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24. 05. 01. ~ 2034. 05. 01.		
	목적 및 사유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및 변압기 설치		

하동군 공고 제2024 - 756호

- 군민과 함께하는 별천지 하동 -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연장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하동군 미래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고자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의 기간연장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5. 3.

하 동 군 수

1. 공 모 명: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기간연장)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24. 4. 4. ~ 5. 16.(43일간)
- 응모자격: 하동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군민, 공무원, 단체 등)
- 공모주제: 군정 발전 전반의 정책 제안
 - 하동군 미래도시 발전방향의 매력도시 실현 방안(우대)
 - 출산 장려, 청년·베이비부머 생활인구 유입 등 인구 정책 제안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 문화·축제·관광 활성화 및 하동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 등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 등

【 제안심사 제외대상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직무발명 보상이 확정된 것
-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과 일반 민원
- 하동군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

※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된 제안만 우선하여 심사

3. 응모방법: 온라인 / 서면(우편) / 전자메일

※ 공무원은 국민신문고(gov.epeople.go.kr) 접속 > 공무원제안 신청

온라인 접 수	① 하동군 홈페이지(https://www.hadong.go.kr): 군민제안 > 미래하동제작소 > 공모제안
	②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국민제안 > 일반제안 > 하동군 응모하기 ※ 신청 시 제목에 [2024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입력 필수, 공모제안서 미첨부 시 공모 참여 불가
	③ 전자메일: pinkmir76@korea.kr
우편 접수	④ (우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본관 2층, 기획예산과 정책제안 담당자 앞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4. 제출서류: 공모제안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고)

5. 심사 및 발표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검토사항
실시 가능성	20점	▶군정에 접목하여 실시 가능성 정도 ▶구체성, 완성도, 법령의 제·개정여부, 예산투입 등
창의성	20점	▶정책 내용과 접근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효율성·효과성	30점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지방재정수입 증대, 정책개선 등의 효과 여부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 등
적용 범위	15점	▶행정기관의 적용범위(군 전체, 광역, 전국 행정기관) ▶실시 횟수나 빈도, 수혜대상자 수 등
계속성	15점	▶제안의 실시 및 효과의 지속 가능 여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안의 실효성 여부

○ 결과통보: 2024년 6월 예정(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6. 시상내역

등급	금상(1명)	은상(2명)	동상(2명)	장려상(3명)
심사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시상금 (하동사랑상품권)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 ※ 시상 인원 등은 제안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건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

7. 유의사항

-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동군에 귀속됩니다.
- 중복 응모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합니다.
- 심사일정 지연될 경우 결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의 표절, 타 기관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 기타 부정행위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회수합니다.
- 그 밖의 관련 사항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하동군 기획예산과 전략기획부서(☎055-880-2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 · 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국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국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국민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경상남도 하동군은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경상남도 하동군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참여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기타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안 심사 및 결과 안내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4 - 757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악양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5. 2.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 명 칭 :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2. 사업자 : 하동군수

3.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 ~ 신성리 일원

4. 사업면적 : 372,068㎡(사유지 171,976㎡)

5. 공고기간 : 2024. 05. 02. ~ 2024. 05. 16.(14일이상/초일불산입)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하동군 건설과 【☎ 055-880-2534】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8.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악양면 입석리	132-21	구	천	38	38	강*한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39*			
2	악양면 봉대리	750	천	천	138	138	강*주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50-*			
3	악양면 평사리	28-6	답	제	284	284×1/2	강*렬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53*			
						284×1/2	전*덕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3*			
4	악양면 평사리	28-4	답	제	661	661×1/2	강*렬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53*			
						661×1/2	전*덕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3*			
5	악양면 평사리	47-3	제	제	377	377	김*수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45*			
6	악양면 입석리	117-3	제	제	228	228	김*남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9*			
7	악양면 입석리	117-1	제	천	307	307	김*남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9*			
8	악양면 평사리	47-6	제	제	314	314	김*덕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562*			
9	악양면 미점리	313-13	도	도	258	258	김*수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94*	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5-* (대림동)	상속인
									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98 (연수동) 80*호	상속인
									김*성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 길 47 (월곶동, 송운노블리안시 티) 80*호	상속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8길 14 (서교동) 101동 100*호	상속인
									김*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89 (서흥동, 지오빌Ⅱ-2차아 파트) 203동 110*호	상속인
									김*수	전라남도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목포시 용당국민로13번 길 1* (용당동)	
									김*경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60 (매곡동, 매곡휴먼시아) 308동 70*호	상속인
									김*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67 번길 41 (초읍동, 삼정그린코아) 101동 50*호	상속인
									김*자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157번가 길 76 (대연동, 송원빌라) 에이동 10*호	상속인
									임*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6 (구의동, 센트럴빌) 20*호	상속인
									임*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비슬로361번길 6-* *층	상속인
									임*순	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 23 (각산동, 대구신서혁신엘 에이치천년나무 6단지) 606동 70*호	상속인
									임*순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25길 69 (방촌동, 유선아덴힐즈) 101동 20*호	상속인
10	악양면 미점리	313-1	도	도	30	30	김*수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94*	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5-* (대림동)	상속인
									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98 (연수동) 80*호	상속인
									김*성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길 47 (월곶동, 송윤노블리안시 티) 80*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8길 14 (서교동) 101동 100*호	상속인
									김*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89 (서흥동, 지오빌Ⅱ-2차아 파트) 203동 110*호	상속인
									김*수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국민로13번 길 1* (용당동)	상속인
									김*경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60 (매곡동, 매곡휴먼시아) 308동 70*호	상속인
									김*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67 번길 41 (초읍동, 삼정그린코아) 101동 50*호	상속인
									김*자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157번가 길 76 (대연동, 송원빌라) 에이동 10*호	상속인
									임*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6 (구의동, 센트럴빌) 20*호	상속인
									임*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비슬로361번길 6-* *층	상속인
									임*순	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 23 (각산동, 대구신서혁신엘 에이치천년나무 6단지) 606동 70*호	상속인
									임*순	대구광역시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동구 동촌로25길 69 (방촌동, 유선아덴힐즈) 101동 20*호	
11	악양면 축지리	802-3	제	제	1,243	1,243	남*희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5*			
12	악양면 축지리	802-1	제	천	116	116	남*희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5*			
13	악양면 입석리	107-1	제	제	840	840	대공*석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561			
14	악양면 봉대리	664-3	제	천	63	63	미등기0 1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59*	홍*엽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59*	토지대 장상 소유자
15	악양면 봉대리	664-2	제	제	1,392	1,392	미등기0 2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59*	홍*엽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59*	토지대 장상 소유자
16	악양면 봉대리	664-1	제	재	50	50	미등기0 3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59*	홍*엽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59*	토지대 장상 소유자
17	악양면 봉대리	661-1	천	천	1,397	1,397	미등기0 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6*	서포*성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6*	토지대 장상 소유자
18	악양면 축지리	1002	천	천	377	377	미등기0 5	-	정*기	-	토지대 장상 소유자
19	악양면 축지리	1000	천	천	182	182	미등기0 6	-	신*모	-	토지대 장상 소유자
20	악양면 축지리	990-1	도	전	36	36	미등기0 7	-	장*용	-	토지대 장상 소유자
21	악양면 축지리	987-5	도	도	153	153	미등기0 8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201*	김*주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201*	토지대 장상 소유자
22	악양면 축지리	986-1	도	전	13	13	미등기0 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이*한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토지대 장상 소유자
23	악양면 축지리	981-3	도	도	237	237	미등기1 0	-	송*권	-	토지대 장상 소유자
24	악양면 축지리	957-5	도	도	109	109	미등기1 1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문*영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토지대 장상 소유자
25	악양면 축지리	938-2	제	제	737	737	미등기1 2	-	허*범	-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26	악양면 축지리	938-1	천	천	658	658	미등기1 3	-	허*범	-	토지대 장상 소유자
27	악양면 축지리	926-3	답	제	288	288	미등기1 4	-	허*범	-	토지대 장상 소유자
28	악양면 축지리	926-1	제	제	410	410	미등기1 5	-	허*범	-	토지대 장상 소유자
29	악양면 축지리	929-2	제	제	73	73	미등기1 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8*	신*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8*	토지대 장상 소유자
30	악양면 축지리	929-1	제	제	443	443	미등기1 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8*	신*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8*	토지대 장상 소유자
31	악양면 축지리	928	제	제	205	205	미등기1 8	-	조*승	-	토지대 장상 소유자
32	악양면 축지리	922-2	제	제	433	433	미등기1 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박*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 파트) 107-100*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7-71 현대파크빌라 *층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아	-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177번길 13-6 (칠암동, 정원홈스텔) 3층 3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의 상속인
									여*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00 창곡동, 위례자이) 3301호 10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3 (서초동, 현대아파트) 21동 8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정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황천강변길 35-1*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03 (송보파인빌) 101동 12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5 (마두동, 백마마을2단지 아파트) 206동 14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33	악양면 축지리	922-1	천	천	922	922	미등기2 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박*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 파트) 107-100*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7-71 현대파크빌라 *층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아	-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의 상속인
									여*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177번길 13-6 (칠암동, 정원홈스텔) 3층 3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00 창곡동, 위례자이) 3301호 10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3 (서초동, 현대아파트) 21동 8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정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1*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03 (송보파인빌) 101동 12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5 (마두동, 백마마을2단지 아파트) 206동 14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34	악양면 축지리	803-2	천	제	66	66	미등기2 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박*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일련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 파트) 107-100*	의 상속인
								배*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7-71 현대파크빌라 *층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아		-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177번길 13-6 (칠암동, 정원홈스텔) 3층 3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00 창곡동, 위례자이) 3301호 10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3 (서초동, 현대아파트) 21동 8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정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황천강변길 35-1*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03 (송보파인빌) 101동 12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5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마두동, 백마마을2단지 아파트) 206동 140*호	의 상속인
35	악양면 축지리	803-1	천	천	2,291	2,291	미등기2 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박*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 파트) 107-100*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7-71 현대파크빌라 *층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배*아	-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177번길 13-6 (칠암동, 정원홈스텔) 3층 3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00 창곡동, 위례자이) 3301호 10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령로68길 13 (서초동, 현대아파트) 21동 80*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의 상속인
									여*정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토지대 장상

일련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횡천강변길 35-1*	소유자의 상속인
									여*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03 (송보파인빌) 101동 120*호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
									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5 (마두동, 백마마을2단지 아파트) 206동 140*호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
36	악양면 축지리	921-3	천	천	896	896	미등기2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안*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7	악양면 축지리	885-3	전	제	139	139	미등기2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이*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8	악양면 축지리	885-2	제	제	36	36	미등기25	-	이*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9	악양면 축지리	884	제	제	274	274	미등기26	-	장*준	-	토지대장상 소유자
40	악양면 축지리	804	천	천	1,557	1,557	미등기27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박*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41	악양면 축지리	788-2	천	천	1,230	1,230	미등기28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박*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42	악양면 축지리	793-1	천	제	1,174	1,174	미등기29	-	이*순	-	토지대장상 소유자
43	악양면 입석리	124-7	제	제	387	387	미등기3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49*	송강*승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49*	토지대장상 소유자
44	악양면 축지리	913-2	제	제	203	203	박*순	진주군 진주읍 본정 51*			
45	악양면 평사리	32-3	구	제	674	674	박*하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56*			
46	악양면 봉대리	670	천	천	714×1/2	714×1/2	박점석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8*			
47	악양면 축지리	1007-3	전	제	89	89	방*준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9*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48	악양면 축지리	1007-2	제	제	106	106	방*준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9*			
49	악양면 봉대리	665-2	제	제	1,471	1,471×1 /2	송본*순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56*			
						1,471×1 /2	천춘*군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38*			
50	악양면 봉대리	665-1	천	천	1,489	1,489×1 /2	송본*순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56*			
51	악양면 봉대리	666	천	천	674	674	송원*길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07*			
52	악양면 봉대리	660	천	천	284	284	신*갑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53*			
53	악양면 미전리	303	천	천	539	539	오*희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55*			
54	악양면 봉대리	655-3	전	제	212	212	이*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55*			
55	악양면 봉대리	655-2	제	제	116	116	이*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55*			
56	악양면 봉대리	674-5	제	전	46	46	이*조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26*	서울특별 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신정동, 양천구청)	압류(세 무2과세 외수입 팀-6)
57	악양면 봉대리	674-4	제	제	340	340	이*조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26*			
58	악양면 봉대리	671-1	구	천	26	26	이*달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30*			
59	악양면 봉대리	667-3	천	천	202	202	이*달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16번길 74 (온천동, 누리마을) 20*호	강*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29-4*	상속인
									손*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27 (일도일동, 동문그린빌라) 5층 50*호	상속인
									이*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77- * (상동, 오성크레*)	상속인
									이*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53번길 29 (명장동, 캐슬빌) 40*호	상속인
									이*선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16번길 51 (덕천동, 벽산아파트)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21*호	
									이*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59 (월영동, 동아1차아파트) 107동 140*호	상속인
									이*홍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1* (신평동)	상속인
									이*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북2길 20-3 (장군동1가, 성지빌라3차) 40*호	상속인
									이*호	부산광역시 동구 구봉북길9번길 리 * (초량동)	상속인
									이*홍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1길 8-5 (대승이너빌) 90*호	상속인
									이*선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16번길 74 (운천동, 누리마을) 20*호	상속인
									이*순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4*	상속인
									이*선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6* (명장동)	상속인
									이*태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 길 11 (무계동, 대동아파트) 1006동 60*호	상속인
									정*희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94 (남부동, 양산신도시아파 트청어람) 109동 50*호	상속인
									정*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부산대학로 144 코아루오피스텔 31*호	
									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64- (사파동)	상속인
									정*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117번길 23-5 (양정동) 20*호	상속인
									정*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6 (범일동, 진흥 마제스타워 범일) 102동 231*호	상속인
									정*석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41 (범일동, 오션브릿지) 101호 330*호	상속인
									정*권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78번길 23 (문현동, 한양아파트) 2동 60*호	상속인
									허*선	부산광역시 동구 구봉북길9번길 * (초량동)	상속인
60	악양면 미점리	144-4	답	전	192	192	이*달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16번길 74 (온천동, 누리마을) 20*호	강*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29-4*	상속인
									손*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27 (일도일동, 동문그린빌라) 5층 50*호	상속인
									이*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77- (상동, 오성크레*)	상속인
									이*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53번길 29 (명장동, 캐슬빌) 40*호	상속인
									이*선	부산광역시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북구 만덕3로16번길 51 (덕천동, 벽산아파트) 121*호	
									이*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59 (월영동, 동아1차아파트) 107동 140*호	상속인
									이*홍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1* (신평동)	상속인
									이*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북2길 20-3 (장군동1가, 성지빌라3차) 40*호	상속인
									이*호	부산광역시 동구 구봉북길9번길 리 * (초량동)	상속인
									이*홍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1길 8-5 (대승이너빌) 90*호	상속인
									이*선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16번길 74 (운천동, 누리마을) 20*호	상속인
									이*순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4*	상속인
									이*선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6* (명장동)	상속인
									이*태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 길 11 (무계동, 대동아파트) 1006동 60*호	상속인
									정*희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94 (남부동, 양산신도시아파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트칭어람) 109동 50*호	
									정*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44 코아루오피스텔 31*호	상속인
									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64- (사파동)	상속인
									정*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117번길 23-5 (양정동) 20*호	상속인
									정*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6 (범일동, 진흥 마제스타워 범일) 102동 231*호	상속인
									정*석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41 (범일동, 오션브릿지) 101호 330*호	상속인
									정*권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78번길 23 (문현동, 한양아파트) 2동 60*호	상속인
									허*선	부산광역시 동구 구봉북길9번길 * (초량동)	상속인
61	악양면 미점리	144-2	답	전	251	251	이*달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16번길 74 (온천동, 누리마을) 20*호	강*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29-4*	상속인
									손*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27 (일도일동, 동문그린빌라) 5층 50*호	상속인
									이*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77- (상동, 오성크레*)	상속인
									이*순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명안로53번길 29 (명장동, 캐슬빌) 40*호	
									이*선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16번길 51 (덕천동, 벽산아파트) 121*호	상속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59 (월영동, 동아1차아파트) 107동 140*호	상속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1* (신평동)	상속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북2길 20-3 (장군동1가, 성지빌라3차) 40*호	상속인
										부산광역시 동구 구봉북길9번길 리 * (초량동)	상속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1길 8-5 (대승이너빌) 90*호	상속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16번길 74 (온천동, 누리마을) 20*호	상속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4*	상속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6* (명장동)	상속인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 길 11 (무계동, 대동아파트) 1006동 60*호	상속인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정*희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94 (남부동, 양산신도시아파 트청어람) 109동 50*호	상속인
									정*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44 코아루오피스텔 31*호	상속인
									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64- (사파동)	상속인
									정*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117번길 23-5 (양정동) 20*호	상속인
									정*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6 (범일동, 진흥 마제스타워 범일) 102동 231*호	상속인
									정*석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41 (범일동, 오션브릿지) 101호 330*호	상속인
									정*권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78번길 23 (문현동, 한양아파트) 2동 60*호	상속인
									허*신	부산광역시 동구 구봉북길9번길 * (초량동)	상속인
62	악양면 축지리	806-3	천	천	190	190	장*원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36*			
63	악양면 입석리	114-1	제	제	1,064	1,064	정*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5*			
64	악양면 봉대리	662	천	천	201	201	최*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27*			
65	악양면 봉대리	662-1	천	천	1,220	1,220	최*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27*			
66	악양면 봉대리	730-3	전	제	598	598	최*대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6*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 업 명	
수용대상토지, 물건내역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서식 7

임차인 공모 공고

하동군에서는 하동 관내 공실(空室)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청년(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4. 5. 7.

하 동 군 수

1. 신청기간 : 2024. 5. 7. ~ 5. 16.(10일간)
2. 신청자격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년 : 하동군(이하 “군”이라 함)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공고일 기준, 1979년 5월생 ~ 2005년 4월생 해당

순 위	입 주 자 격	증 병 서 류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중 택일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직전년도 소득 기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재산세) ※ 직전 1개년 전국기준 재산세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3. 지원제외 대상 : 임대인의 직계가족
4.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입주자격 순위(1·2·3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
 - 임대주택 수량에 따라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임차인 확정
 - 결과발표 : 2024. 5. 17. 16시 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5. 입주가능(예정)일 : 2024. 7. 00.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6.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 대 현 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층	방 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NO. 2024-1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509	1	목조	1	1	27	200	15	

7.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동안 주 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차인 입주일로부터 산정함.
- 임차인 신청자 중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소득이 낮은 자 > 연령(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 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8. 문의사항 : 하동군 건축과 건축행정부서(055-880-2148)

9. 입주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발 행 처
공통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읍·면사무소, 정부24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중 택일)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최근 1개년 소득 기준 ※ 6.30일 이전인 경우 신청일의 직직전 귀속연도까 지만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제출	세무서, 홈택스 (인터넷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읍·면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각 1부	정부24,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

서식 8

입주 신청서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해당 임대주택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연 락 처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1			
2			
3			
4			
5			
6			
7			
8			

위 신청인은 하동군에서 공급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하동군 공고 제2024-774호

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하 동 군 수

- 제 목: 2024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근거법규
 - 「국세기본법」 제11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2. (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055-880-2565,6)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순번	년도	기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주소지	반송사유
1	24	1	(유)해동**	경남71라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수취인부재
2	24	1	정*식	경남80무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수취인부재
3	24	1	조*도	52저8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수취인부재
4	24	1	이*우	경남7모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수취인부재
5	24	1	WEERAKOO****YANSELAGEJ A****A	15서3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수취인부재
6	24	1	정*호	84서3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수취인부재
7	24	1	백*성	97너4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수취인부재
8	24	1	(주)비**하동	91라3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늘봉길	수취인불명
9	24	1	김*중	43너2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하동산길	수취인불명
10	24	1	김*중	90도6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하동산길	수취인불명
11	24	1	김*곤	65두6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수취인불명
12	24	1	(주)풍**업	경남71라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수취인불명
13	24	1	동남**산업(주)	경남7도4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수취인불명
14	24	1	하남**영농조합	경남81무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수취인불명
15	24	1	서*한	경남7느1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수취인불명
16	24	1	김*록	경남81무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수취인불명
17	24	1	하*철	29주9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수취인불명
18	24	1	강*연	25더6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길	수취인불명
19	24	1	이*순	82도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수취인불명
20	24	1	이*순	84누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수취인불명
21	24	1	이*성	경남81무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수취인불명
22	24	1	이*성	경남81무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수취인불명
23	24	1	(주)강남**여행사	경남72바9**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수취인불명
24	24	1	(주)강남**여행사	경남72바9**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수취인불명
25	24	1	노*현	72나3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수취인불명
26	24	1	노*현	84서6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수취인불명
27	24	1	이*철	84구9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28	24	1	김*재	96러8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수취인불명
29	24	1	권*현	66수8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2길	수취인불명
30	24	1	주식회사**건설	86거7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31	24	1	주식회사**건설	97오1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32	24	1	이*숙	98수87**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수취인불명
33	24	1	강*엽	부산1나3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수취인불명
34	24	1	하*환	93가7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수취인불명
35	24	1	노*원	부산30너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계성길	수취인불명
36	24	1	이*환	경남7구86**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1길	수취인불명
37	24	1	이*환	경남7노4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1길	수취인불명
38	24	1	황*이	경남70나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수취인불명
39	24	1	박*규	53라4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원로	수취인불명
40	24	1	강*호	95고2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수취인불명
41	24	1	고*희	97나1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동길	수취인불명
42	24	1	이*철	97나2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수취인불명

43	24	1	최*식	96무7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내남길	수취인불명
44	24	1	(주)신한**업지점	86조87**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금촌길	수취인불명
45	24	1	정*섭	91더4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공설운동장로	수취인불명
46	24	1	문*진	73로6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수취인불명
47	24	1	정*진	82버9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수취인불명
48	24	1	이**(주)하동지점	96무7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수취인불명
49	24	1	**정보통신(주)	경남81무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이사감
50	24	1	홍*표	95서4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이사감
51	24	1	배*현	81로7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이사감
52	24	1	김*운	80노7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이사감
53	24	1	김*운	97거2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이사감
54	24	1	김*훈	37머2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이사감
55	24	1	조*택	96주3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이사감
56	24	1	한*동	경남47나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상덕길	이사감
57	24	1	최*기	79로1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이사감
58	24	1	김*야	49우1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이사감
59	24	1	(주)**건설	96두8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이사감
60	24	1	조*택	86누9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이사감
61	24	1	**건설(주)	경남81무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이사감
62	24	1	서*명	경남5가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이사감
63	24	1	서*명	경남7루6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이사감
64	24	1	김*미	19조4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이사감
65	24	1	하동****단지개발주식회사	96구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이사감
66	24	1	(주)**엔지니어링	49부8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이사감
67	24	1	한국**협회경남조경수유	97가3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테일로	이사감
68	24	1	주식회사**호건설	95소4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이사감
69	24	1	김*석	92서6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	이사감
70	24	1	이*규	경남8더38**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이사감
71	24	1	전*제	79고3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이사감
72	24	1	박*영	05구7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이사감
73	24	1	박*현	부산6라3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이사감
74	24	1	김*배	91더4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이사감
75	24	1	강*정	40수9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정길	이사감
76	24	1	박*은	10머1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이사감
77	24	1	(주)**랜드	경남47나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이사감
78	24	1	주식회사**랜드산업	97나1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이사감
79	24	1	**랜드산업	97버4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이사감
80	24	1	오*택	37구1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이사감
81	24	1	박*문	경남8조1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이사감
82	24	1	이*식	62버7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이사감
83	24	1	김*환	93가4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이사감
84	24	1	(주)**개발	90머0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2	이사감
85	24	1	(주)**건설	89너8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이사감
86	24	1	(주)**건설	97더6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이사감
87	24	1	**영농조합법인	97더6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이사감

88	24	1	**토건(주)	경남80루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총로	이사감
89	24	1	천*춘	39거8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구노량길	이사감
90	24	1	강*철	66오8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길	이사감
91	24	1	신*현	97버1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시목길	이사감
92	24	1	김*식	84더8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이사감
93	24	1	김*식	92서8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이사감
94	24	1	김*식	97머7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이사감
95	24	1	하*수	70가3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이사감
96	24	1	윤*무	62라1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이사감
97	24	1	김*곤	경남1노1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이사감
98	24	1	전*상	04버1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이사감
99	24	1	김*호	96주3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상쌍길	이사감
100	24	1	김*열	12수6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정안길	이사감
101	24	1	임*길	경남7도8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이사감
102	24	1	송*준	87조3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이사감
103	24	1	주식회사**개발	96도8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이사감
104	24	1	주식회사**개발	97오8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이사감
105	24	1	(주)우정**산업	97나1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이사감
106	24	1	(주)우정**산업	81더7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이사감
107	24	1	광진***주식회사	88로4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이사감
108	24	1	(주)태*	79버7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이사감
109	24	1	우주**(주)	경남99버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이사감
110	24	1	우주**(주)	경남99버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이사감
111	24	1	(주)동*	97거2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이사감
112	24	1	(주)**산업	경남8코2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이사감
113	24	1	김*현	66라7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성길	이사감
114	24	1	오*영	97나2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이사감
115	24	1	김*오	88서1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사기아름길	이사감
116	24	1	조*재	96무7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이사감
117	24	1	주식회사**	97거8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이사감
118	24	1	서부**주식회사	85고9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이사감
119	24	1	김*형	88버38**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반계길	이사감
120	24	1	(주)하동**관광	79버7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이사감
121	24	1	합자회사진교****회사	경남81무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이사감
122	24	1	(주)동*	97나9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이사감
123	24	1	***영농조합법인	76어5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이사감
124	24	1	우정조경(주)	97나1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이사감
125	24	1	**건설주식회사	90어7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이사감
126	24	1	(주)평화**	경남47가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주소불명
127	24	1	김*진	69루2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주소불명
128	24	1	주*홍	40너9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주소불명
129	24	1	양*호	46보3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주소불명
130	24	1	강*계	경남81무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주소불명
131	24	1	(주)태화***	79버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20길	주소불명
132	24	1	(주)***개발	82버64**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40길	주소불명

지방세환급금 세입조치 대상 시효소멸내역('24.05.07기준)

(단위 : 원)

환급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환급사유	환급총액	환급결의일자	시효완료예정일
계	131					1,880,480		
48850-2017-000906	박*한	630704-1*****	106001-201701-3-360-003034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14,860	2017-06-13	2022-06-12
48850-2017-001007	문*순	610125-2*****	106001-201706-1-250-00626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2,880	2017-07-12	2022-07-12
48850-2017-001115	허*	651220-1*****	106001-201706-1-410-01736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830	2017-07-12	2022-07-12
48850-2017-001165	박*민	670711-1*****	106001-201701-3-250-003208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84,200	2017-07-12	2022-07-12
48850-2017-001291	최*영	581013-2*****	140001-201707-2-250-000220	14000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880	2017-07-14	2022-06-29
48850-2017-001626	김*신	800520-2*****	140001-201707-2-250-000555	14000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550	2017-07-14	2022-06-30
48850-2017-001688	전*순	641021-2*****	140001-201707-2-380-000617	14000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20	2017-07-14	2022-06-24
48850-2017-001896	김*분	600320-2*****	106001-201706-1-370-018371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1,370	2017-08-14	2022-08-11
48850-2017-001924	장*상	541218-1*****	106001-201701-3-250-00344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96,380	2017-08-14	2022-08-11
48850-2017-001991	유*지	950602-2*****	140001-201709-2-250-000953	14000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280	2017-09-05	2022-06-16
48850-2017-002069	신*균	581205-1*****	106001-201706-1-370-013041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9,450	2017-09-08	2022-09-07
48850-2017-002070	이*현	811130-1*****	106001-201706-1-250-01305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700	2017-09-08	2022-09-07
	이*영	840302-2*****	140001-201709-2-	140001 지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8,210	2017-09-14	2022-08-09

48850-2017-002022			250-000988	세(종합소득)				
48850-2017-002025	이*진	800906-2*****	140001-201709-2-370-000991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2,110	2017-09-14	2022-08-18
48850-2017-002267	황*덕	470429-2*****	106001-201706-1-250-011665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580	2017-10-12	2022-10-11
48850-2017-002283	서*생	530630-1*****	106001-201706-1-310-013045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7,440	2017-10-12	2022-10-11
48850-2017-002304	김*배	460628-1*****	106001-201706-1-350-015351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800	2017-10-12	2022-10-11
48850-2017-002310	강*분	550803-2*****	106001-201706-1-250-016251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6,710	2017-10-12	2022-10-11
48850-2017-002328	서*생	530630-1*****	106001-201706-1-310-017982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7,440	2017-10-12	2022-10-11
48850-2017-002343	서*생	530630-1*****	106001-201701-3-310-000408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7,520	2017-10-12	2022-10-11
48850-2017-002491	이*숙	640325-2*****	106001-201706-1-420-014682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2,270	2017-11-13	2022-11-06
48850-2017-002505	고*식	470228-1*****	106001-201706-1-370-016036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5,690	2017-11-13	2022-11-06
48850-2017-002663	박*국	670815-1*****	106001-201706-1-250-012833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3,140	2017-12-12	2022-12-08
48850-2017-002678	지*영	540610-1*****	106001-201706-1-370-014794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960	2017-12-12	2022-12-08
48850-2017-002691	오*권	470817-1*****	106001-201706-1-370-016485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420	2017-12-12	2022-12-08
48850-2017-002709	박*규	560201-1*****	106001-201706-1-380-018122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2,500	2017-12-12	2022-12-08
48850-2017-002715	정*현	411110-1*****	106001-201706-1-350-018531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670	2017-12-12	2022-12-08
	김*채	551015-1*****	106001-201706-1-	106001 자동차세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3,010	2017-12-12	2022-12-08

48850-2017-002718			250-018698	(자동차)				
48850-2017-002728	주식회사 ** 건설	194711-0*****	106001-201701-3-250-000504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660	2017-12-12	2022-12-08
48850-2017-002736	박*원	751220-1*****	106001-201701-3-370-001286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4,040	2017-12-12	2022-12-08
48850-2018-000028	이*호	500223-1*****	106001-201706-1-410-01224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45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48	강*용	450102-1*****	106001-201706-1-360-01423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0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56	정*화	580503-1*****	106001-201706-1-410-015064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4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59	오*권	470817-1*****	106001-201706-1-370-015449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64	박*일	500311-1*****	106001-201706-1-350-015988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65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70	김*태	500118-1*****	106001-201706-1-250-01628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67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71	황*엽	491225-2*****	106001-201706-1-330-016328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9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76	오*권	470817-1*****	106001-201706-1-370-01749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37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82	박*수	470113-1*****	106001-201706-1-410-017739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73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86	정*화	580503-1*****	106001-201706-1-410-018196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4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097	합*회사**농 업회사	614-**-*****	106001-201706-1-360-01886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23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105	서*남	361013-2*****	106001-201712-1-390-019876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6,410	2018-01-05	2023-01-04
	이*자	420601-2*****	106001-201701-3-	106001 자동차세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1,83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207			250-001237	(자동차)				
48850-2018-000210	정*채	421114-1*****	106001-201701-3-250-001773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200	2018-01-05	2023-01-04
48850-2018-000298	조*계	601104-2*****	114001-201701-1-310-002401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9,390	2018-02-02	2023-02-01
48850-2018-000356	홍*순	660328-2*****	105304-201709-1-320-041602	105304 재산세(토지)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2,510	2018-02-28	2023-02-27
48850-2018-000792	장*운	711207-1*****	140001-201805-3-250-001921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1 기납부자 이종납부	8,100	2018-06-07	2023-06-01
48850-2018-000948	서*주	771111-1*****	106001-201806-1-250-00060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7,17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06	박*석	860215-1*****	106001-201806-1-250-007551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01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07	조*선	490422-2*****	106001-201806-1-250-007577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56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19	김*연	580921-2*****	106001-201806-1-370-00922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6,01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23	여*일	550814-1*****	106001-201806-1-320-009669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2,69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29	김*섭	840310-1*****	106001-201806-1-340-00999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2,14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49	김*기	700303-1*****	106001-201806-1-420-01198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4,59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57	김*민	831220-1*****	106001-201806-1-370-012963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4,72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59	김*례	590825-2*****	106001-201806-1-370-013369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3,57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064	변*현	571203-1*****	106001-201806-1-420-01392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000	2018-07-06	2023-07-05
	박*민	930622-1*****	106001-201806-2-	106001 자동차세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420	2018-07-06	2023-07-05

48850-2018-001117			370-001702	(자동차)				
48850-2018-001243	성*문	771221-1*****	140001-201807-2-410-000686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39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252	전*숙	760616-2*****	140001-201807-2-330-000695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1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265	오*수	970409-1*****	140001-201807-2-250-000708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1,68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277	최*영	581013-2*****	140001-201807-2-250-000720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1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316	최*순	921223-2*****	140001-201807-2-380-000759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31,48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353	강*주	940623-2*****	140001-201807-2-410-000796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42,33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404	김*지	880426-2*****	140001-201807-2-250-000847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36,62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534	하*진	781214-1*****	140001-201807-2-250-000977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1,29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734	전*순	641021-2*****	140001-201807-2-380-001177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20	2018-07-18	2023-06-30
48850-2018-001831	김*엽	470220-2*****	105301-201607-1-370-004603	105301 재산세(건축물)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30,410	2018-08-03	2023-07-31
48850-2018-001832	김*엽	470220-2*****	105301-201707-1-370-004730	105301 재산세(건축물)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26,920	2018-08-03	2023-07-31
48850-2018-001842	김*엽	470220-2*****	105301-201407-1-370-003910	105301 재산세(건축물)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38,250	2018-08-03	2023-07-31
48850-2018-001843	김*엽	470220-2*****	105301-201507-1-370-003994	105301 재산세(건축물)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34,240	2018-08-03	2023-07-31
48850-2018-001861	김*자	570510-2*****	105301-201807-1-410-006938	105301 재산세(건축물)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2,410	2018-08-03	2023-08-03
	주*회사 ***	195411-0*****	106001-201806-1-	106001 자동차세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9,93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1874	트카		250-003662	(자동차)				
48850-2018-001911	윤*환	700913-1*****	106001-201806-1-320-01272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1,43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1915	이*근	600513-1*****	106001-201806-1-360-013058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1,58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1929	김*혁	600827-1*****	106001-201806-1-310-014827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2,42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1935	정*한	770624-1*****	106001-201806-1-410-01520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1,50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1937	조*점	600506-2*****	106001-201806-1-340-015273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1,72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1944	정*한	770624-1*****	106001-201806-1-410-015956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1,57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1952	**건설 주식 회사	171211-0*****	106001-201806-1-250-016611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75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2003	이*섭	821125-1*****	106001-201801-3-420-00637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2,740	2018-08-09	2023-08-03
48850-2018-002024	하*미	700304-2*****	104001-201808-1-350-010509	104001 주민세(개인균등)	31 기납부자 이종납부	11,000	2018-08-20	2023-08-17
48850-2018-002141	손*주	610415-1*****	106001-201806-1-370-01578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9,610	2018-09-07	2023-09-05
48850-2018-002154	김*묵	511013-1*****	106001-201806-1-410-01776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780	2018-09-07	2023-09-05
48850-2018-002161	김*민	821023-1*****	106001-201806-1-420-01865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970	2018-09-07	2023-09-05
48850-2018-002189	조*원	880730-1*****	106001-201801-3-370-003398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5,500	2018-09-07	2023-09-05
48850-2018-002347	정*구	540205-1*****	106001-201806-1-380-008133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8,870	2018-10-11	2023-10-10
	한*석	560530-1*****	106001-201806-1-	106001 자동차세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800	2018-10-11	2023-10-10

48850-2018-002374			360-013139	(자동차)				
48850-2018-002375	옥*아	590618-2*****	106001-201806-1-310-013144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040	2018-10-11	2023-10-10
48850-2018-002377	이*삼	560317-1*****	106001-201806-1-250-013191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880	2018-10-11	2023-10-10
48850-2018-002379	이*삼	560317-1*****	106001-201806-1-250-013574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880	2018-10-11	2023-10-10
48850-2018-002415	이*엽	630305-2*****	106001-201806-1-250-018224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7,570	2018-10-11	2023-10-10
48850-2018-002418	강*원	510602-1*****	106001-201806-1-420-018443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160	2018-10-11	2023-10-10
48850-2018-002439	유*형	560125-1*****	106001-201801-3-380-00332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69,980	2018-10-11	2023-10-10
48850-2018-002524	최*희	830908-2*****	106001-201806-1-250-006708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3,18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531	이*범	330516-1*****	106001-201806-1-370-008817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3,96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547	김*규	450207-1*****	106001-201806-1-350-01162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5,61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551	박*수	551225-1*****	106001-201806-1-330-01250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4,28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560	정*수	590410-1*****	106001-201806-1-250-013355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5,77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595	김*곤	411018-1*****	106001-201806-1-380-016514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6,18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597	정*생	370927-1*****	106001-201806-1-380-01659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4,48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610	김*곤	411018-1*****	106001-201806-1-380-018192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0,520	2018-11-19	2023-11-15
	조*호	690819-1*****	106001-201801-3-	106001 자동차세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0,59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657			330-004604	(자동차)				
48850-2018-002671	이*애	560105-2*****	106001-201801-3-250-006380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0,88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672	강*호	620507-1*****	106001-201801-3-360-006423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39,410	2018-11-19	2023-11-15
48850-2018-002792	진*한	751222-1*****	106001-201806-1-400-014029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860	2018-12-12	2023-12-07
48850-2018-002806	최*숙	670914-2*****	106001-201806-1-340-015793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3,360	2018-12-12	2023-12-07
48850-2018-002845	김*근	510307-1*****	106001-201801-3-410-003201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5,660	2018-12-12	2023-12-07
48850-2018-002853	김*근	510307-1*****	106001-201801-3-410-004669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750	2018-12-12	2023-12-07
48850-2018-002864	이*선	810923-2*****	106001-201801-3-370-006197	106001 자동차세 (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6,090	2018-12-12	2023-12-07
48850-2018-002878	김*선	270310-2*****	105304-201409-1-250-002074	105304 재산세(토지)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17,620	2018-12-12	2023-12-11
48850-2018-002879	김*선	270310-2*****	105304-201509-1-250-002030	105304 재산세(토지)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18,280	2018-12-12	2023-12-11
48850-2018-002880	김*선	270310-2*****	105304-201609-1-250-002042	105304 재산세(토지)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19,250	2018-12-12	2023-12-11
48850-2018-002881	김*선	270310-2*****	105304-201709-1-250-002025	105304 재산세(토지)	12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20,450	2018-12-12	2023-12-11
48850-2018-002912	박*서	480327-1*****	140001-201812-2-410-001418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177,120	2018-12-12	2023-08-09
48850-2018-002914	배*태	511203-1*****	140001-201812-2-250-001420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7,520	2018-12-12	2023-06-23
48850-2018-002926	왕*호	610429-1*****	140001-201812-2-250-001432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710	2018-12-12	2023-08-10
	최*규	700426-1*****	140001-201812-2-	140001 지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3,690	2018-12-12	2023-05-26

48850-2018-002959			410-001465	세(종합소득)				
48850-2018-002985	이*경	650914-2*****	140001-201812-2-320-001491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40	2018-12-12	2023-06-03
48850-2018-003032	이*순	290813-2*****	140002-201804-3-410-000223	140002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1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28,330	2018-12-24	2023-12-24
48850-2019-000011	강*철	581008-1*****	106001-201806-1-340-006311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070	2019-01-08	2024-01-08
48850-2019-000028	이*현	730518-1*****	106001-201806-1-330-011916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920	2019-01-08	2024-01-08
48850-2019-000077	정*주	421222-1*****	106001-201806-1-360-018261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30	2019-01-08	2024-01-08
48850-2019-000079	주*회사 *** 전력	194711-0*****	106001-201806-1-250-018329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590	2019-01-08	2024-01-08
48850-2019-000164	김*야	740113-2*****	106001-201812-1-320-028294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6,510	2019-01-08	2024-01-08
48850-2019-000168	주*회사 ** 한경	170111-0*****	106001-201812-1-250-028834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970	2019-01-08	2024-01-08
48850-2019-000212	손*식	790310-1*****	106001-201801-3-410-003312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3,840	2019-01-16	2024-01-08
48850-2019-000302	박*순	370302-2*****	114001-201901-1-370-006368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31 기납부자 이종납부	9,000	2019-02-01	2024-01-31
48850-2019-000303	박*순	370302-2*****	114001-201901-2-370-000006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31 기납부자 이종납부	9,000	2019-02-01	2024-01-31
48850-2019-000320	조*	490628-1*****	106001-201901-3-250-006160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800	2019-02-13	2024-02-08
48850-2019-000450	임*순	570920-2*****	140001-201903-2-250-000075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25,930	2019-03-26	2024-03-09

하동군 공고 제2024-802호

금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공고

「금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의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하 동 군 수

1.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순위	회사명	대표	소재지	공법명	비고
1	(주)조은환경	조현철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J-SBR	채택

2. 공법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제 안 자 : (주)조은환경 대표 조현철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의위원						비고
	A	B	C	D	E	F	
1. 계획의 적정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2. 수질관리의 적정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3. 유지관리 용이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4. 가동의 적정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최종결과	“적정”						

※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임에 따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적정한 경우 공법으로 선정.

3. 평가위원 명단

소 속	성 명	비 고
하동군 투자유치과	공춘성	
하동군 환경보호과	김창준	
진주시 하수시설과	이정기	
남해군 상하수도과	윤한진	
산청군 상하수도과	이승준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오식	

하동군 공고 제2024 - 814호

공 고 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검사 안내 및 명령 과태료 처분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29.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하동군 안전교통과(☎055-880-2399)
5. 공고사항

가. 자동차검사 경과안내 대상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따라 자동차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지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7%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압류예고통지를 받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4. 5. 14.

하 동 군 수

□ 사전안내장(4월)

순서	차량번호	소유자	우편번호	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1	91더4347	정*섭	5232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공설운동장로 1*	2024.03.08	수취인불명	일반
2	26마7784	이*주	52320	경남 하동군 횡천면 월매재길 2*	2024.04.04	수취인불명	일반
3	51모1775	주*명	52355	경남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5 1*4동 3*4호 (해양파크)	2024.04.01	이시감	일반
4	83모3893	이*점	52320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길 2*-1	2024.04.04	수취인불명	일반
5	13서4142	강*호	52352	경남 하동군 금남면 비석거리길 *1	2024.04.03	폐문부재	일반
6	21보0909	양*석	52312	경남 하동군 옥종면 호계천로 1*3-5	2024.04.03	수취인부재	일반
7	81라6550	서*홍	52352	경남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1*6	2024.04.03	이시감	일반
8	69우4886	고*준	52322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안길 9-*	2024.04.05	이사감	일반
9	65다5254	권*화	52305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8	2024.04.09	수취인불명	일반
10	94우7510	하동슬로*****합	52305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4	2024.04.09	수취인불명	일반
11	40누5975	변*식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2길 2* 101동 104 호(LH하동광평송림마을)	2024.04.11	반송	일반
12	29우1563	이*정	52347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5* 3층 3*2호	2024.04.04	이사감	일반
13	92도4182	정*현외2인	52342	경남 하동군 진교면 읍원길 10-*0	2024.04.04	이사감	일반
14	13러3010	장*열	52339	경남 하동군 고전면 냉정길 5-*	2024.04.08	이사감	일반
15	29보0989	최*희	52328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 101동 14*3 호(대경송림타운)	2024.04.08	반송	일반

유효기간경과업서(4월)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1	62구3406	박*진	52305	경남 하동군 악양면 중기길 8	2023.03.12	폐문부재	10948-6129-1405
2	57로3621	김*민	52324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9 나동 3*2호 무지개맨션	2023.03.13	폐문부재	10948-6129-1404
3	86어2744	하*호	52314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4	2023.03.12	반송	10948-6129-1406

검사명령서(1월)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1	경남99바 9190	우주**(주)	52350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1	2024.04.01	이사감	일반
2	97너4544	이*부	52331	경남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2*-2 2*2호 송림아트빌라	2024.04.01	이사감	일반
3	112루9991	하*도	52350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2 2층	2024.04.01	이사감	일반
4	81구7606	김*곤	52308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0	2024.04.09	주소불명	일반
5	84더8880	김*식	52340	경남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9	2024.04.05	이시감	일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1	90보9127	이*열	5233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33, 2층	2024.03.13	폐문부재	10948-6129-1414
2	87라6866	이*만	52321	경남 하동군 적량면 상우길 5*	2024.04.10	반송	10948-6129-3740
3	97오8305	제이제이**주식회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7*	2024.04.10	반송	10948-6129-3755

		사					
4	92마9243	조*일	52312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3*8-7	2024.04.09	반송	10948-6129-3738
5	36러1723	김*숙	52311	경남 하동군 옥종면 문암길 5*	2024.04.09	반송	10948-6129-3745
6	34도2073	하동읍자*방법대	52325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3*	2024.04.16	수취인불명	일반
7	60두3126	주식회사 **파도	52332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2 1층	2024.04.17	이사감	일반
8	20조1596	김*정	5232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0-14	2024.04.17	이사	일반
9	81너4504	주식회사 화성*기	5233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0 2층	2024.04.19	수취인불명	일반
10	90도6327	제이제이**주식회사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7*	2024.04.19	반송	10948-6129-4715
11	41저1142	정*심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 101동 140*호(LH천년@)	2024.04.19	반송	10948-6129-4713
12	81너4582	(주)태*	52350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6	2024.04.19	폐문부재	10948-6129-4718
13	23나4243	김*태	52353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3*-8	2024.14	수취인부재	일반